

제 1 장. 총론

1. 소득세의 기초개념
2. 납세의무자
3. 과세기관과 납세지
4.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1절 소득세의 기초 개념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개인을 과세객체로 하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2. 소득세의 특징

특징	내 용
<p>열거주의 과세방법</p>	<p>소득이란 특정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소득세법 상 소득이란 소득원천설에 의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p>
<p>개인단위 과세</p>	<p>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므로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p>

특징	내 용
중합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중합과세방법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중합과세되는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납세인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적용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중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과세체계에 의해 각각의 소득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인적공제와 누진과세	부양가족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인적공제제도를 갖고 있는 인세이다. 또한 개인의 세금부담능력(담세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특징	내 용
신고납세 제도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며 정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국세, 보통세, 독립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국세이며, 특정 사용목적이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보통세이다. 또한 다른 독립적인 과세대상을 가지는 독립세이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 소득세법상 주요 비열거 소득

- 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대주주와 장외거래 양도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 ② 채권의 양도차익(채권의 이자와 환매조건부 채권의 양도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③ 기계장치의 양도차익(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 ④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 ⑤ 연구및 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계약에 의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한 경우는 과세)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인무자(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받는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 유형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두 가지가 있다.

특징	내 용
<p>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p>	<p>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방식(소득을 받는 자의 입자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따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음.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소득을 다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소득’ 이라고도 한다. 종합소득 중 분리과세대상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p>
<p>예납적 원천징수(종합과세)</p>	<p>원천징수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원천징수 방식. 소득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고 이를 다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정산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예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종합과세대상소득’ 이라고도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같이 종합소득 중 종합과세대상 소득의 원천징수가 여기에 해당.</p>

※ 거주자의 분리과세대상 소득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의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 ③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선택적 분리과세)

④ 기타소득

- 복권당첨소득 등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선택적 분리과세)

⑤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없다.